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147 |
|----------|-----|

2022. 12. 16.(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안지윤 의원 등 8명

나.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8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2월 6일

-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지윤 의원)

가. 제안사유

- 최근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유행, 해외 유입 마약류의 급증 등으로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약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비밀준수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관련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마약 및 약물 등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은 단속, 검거, 수사를, 중앙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예방교육 및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만연함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방교육 강화 및 폐해에 대한 홍보 확대,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이 보다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12개 시·도에서 마약류 및 약물 관련 조례 제정·시행 중

- 미제정(5): 울산, 광주, 충북, 전남, 강원

- 이에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자를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킴으로써 마약 수요와 범죄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타당함.
- 안 제4조와 제5조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시행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예방교육,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와 제7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추진 관계자의 비밀준수의 의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에 예방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6월 26일은 UN에서 지정한 기념일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퇴치의 날이며, 동법 제2조의3 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의2는 기념행사 실시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타당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안 제9조와 제10조는 효율적인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안전한 일상을 흔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범죄와 이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써 마약 및 유해약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마약 수요와 범죄 발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3.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조사·연구 및 오남용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약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등

3. 관련조문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년~2027년 (5년간)
- 예방계획의 수립 : 자체수립
 - 자체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비용 발생하지 않음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기 추진 중이며, 매년 추진으로 계획함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 기 추진 중이며, 매년 추진으로 계획함

-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은 명확한 사업 부재 및 지원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추계 곤란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 기 추진 중이며, 매년 추진으로 계획함

나. 추계 결과 : 153,360천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 20,000천원 × 5년 = 100,000천원 * 2022년 예산 기준
 - 향후 5년간 1억원 수반될 예정이나, 기 추진 중으로 신규 수반 해당없음
 -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 1,672천원 × 5년 = 8,360천원 * 2022년 예산 기준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을 위한 예방교육
 - 9,000천원 × 5년 = 45,000천원 * 2022년 예산 기준
- ※ 계획수립,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은 표준화된 분석법 부재 등으로 비용추계 곤란

다. 재원조달방안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 국비 50%, 도비 50%
-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 도비 100%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을 위한 예방교육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 (2023년) | 2차년도 (2024년) | 3차년도 (2025년) | 4차년도 (2026년) | 5차년도 (2027년) | 계 | |
|----------------------------|-----------------|-----------------|-----------------|-----------------|-----------------|----------------|---------|
| 세 출 | 30,672 | 30,672 | 30,672 | 30,672 | 30,672 | 153,360 | |
| 마약류 중독자치료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0 | |
| 예방교육 | 9,000 | 9,000 | 9,000 | 9,000 | 9,000 | 45,000 | |
|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 1,672 | 1,672 | 1,672 | 1,672 | 1,672 | 8,360 | |
| 재원 조달 | 30,672 | 30,672 | 30,672 | 30,672 | 30,672 | 153,360 | |
| 의존 재원 | 소 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 보조금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 지방교부세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20,672 | 20,672 | 20,672 | 20,672 | 20,672 | 103,360 |
| | 지방세 | 20,672 | 20,672 | 20,672 | 20,672 | 20,672 | 103,360 |
| | 세외수입 | | | | | | |
| 지방채 | | | | | | | |
| 기 금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시·군비 | | |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 |